

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관리대행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관리대행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직무교육대행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·보건진단기관		지정신청서	처리기관
			30일
신청인	① 기관명		② 전화번호
	③ 소재지		
	④ 대표자성명		⑤ 주민등록번호
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<span style="font-size: 2em;">[</span> <input type="checkbox"/> 제4조의3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제21조 <input type="checkbox"/> 제58조 <span style="font-size: 2em;">]</span> 의 규정에 의하여  <span style="font-size: 2em;">[</span> 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관리대행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관리대행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직무교육대행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안전·보건진단기관 <span style="font-size: 2em;">]</span> 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			
노동부장관		신청인 귀하	(인)
첨부서류 : 1. 정관(직무교육대행기관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법인인 경우에 한함) 2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재산평가서. 다만,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) 3.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(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한함) 4. 건물시설 및 기계기구명세서 1부 5.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자의 보유상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, 고용계약서사본 각 1부			수수료 없음

3203-54민(1)  
86.10.6 승인

190mm × 268mm  
(신문용지 54g/m<sup>2</sup>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